

#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



-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은 상시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2019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: **2019. 1. 2. ~ 12. 31.**
- 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
- 사회적기업에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.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또는 다양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가능합니다.
- 취약계층에게 일자리·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·단체 등을 설립하여야 합니다. 기업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-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.

# 사회적기업 인증·지원제도 관련 상담 안내

**1800-2012** 전국대표번호 (해당 권역 지원기관 자동 연결)

## 권역별 지원기관 리스트

지역	지원기관명	주소	전화번호 / 팩스 / 이메일
서울	(사)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 (충정로 2가, 본관)	TEL: 02-365-0330 FAX: 02-365-0440 E-mail: joyfulunion@naver.com
경기	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자성로 470번길 34, 상가동 2층	TEL: 070-4763-0130 FAX: 070-4763-0120 E-mail: pns@pns.or.kr
인천	(사)홍익경제연구소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, 계림빌딩 6층	TEL: 032-446-9492 FAX: 032-446-9489 E-mail: hongikse@daum.net
강원	(사)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,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(우산동)	TEL: 033-749-3905 FAX: 033-749-3900 E-mail: gwcs0524@naver.com
대구	(사)커뮤니티와경제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(동산동 11-4번지)	TEL: 053-956-5001 FAX: 053-217-5003 E-mail: ucsr@hanmail.net
경북	(사)지역과소셜비즈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	TEL: 053-956-5002 FAX: 053-267-5003 E-mail: se@sebiz.or.kr
부산	(사)사회적기업연구원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	TEL: 051-517-0266 FAX: 050-4926-0028 E-mail: info@rise.or.kr
울산	사회적협동조합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	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, 2층	TEL: 052-267-6176 FAX: 052-267-6177 E-mail: ulsan@sescoop.or.kr
경남	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	TEL: 055-266-7970 FAX: 0303-0945-7945 E-mail: moducoop@naver.com
광주	사회적협동조합 살림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	TEL: 062-383-1136 FAX: 062-384-1137 E-mail: ses@socialcenter.kr
전북	(사)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,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	TEL: 063-214-9355 FAX: 063-251-3348 E-mail: jbse2019@gmail.com
전남	(사)상생나무	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,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	TEL: 061-282-9588 FAX: 0303-0955-9571 E-mail: sstreetree@naver.com
제주	(사)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	TEL: 064-726-4843 FAX: 064-755-4843 E-mail: jejusen2015@hanmail.net
대전	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(선화동, 3층)	TEL: 042-223-9914 FAX: 070-8787-7000 E-mail: c-cmail@hanmail.net
충북	(사)사람과경제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(운천동, 5층)	TEL: 043-222-9001 FAX: 043-223-9201 E-mail: cbse@hanmail.net
충남	(사)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	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-3,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	TEL: 041-415-2012 FAX: 041-415-2013 E-mail: cnse1212@gmail.com



# 2019년도 사회적기업 안내

SOCIAL ENTERPRISE GUIDE

## 안내

# 사회적기업이란

##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

###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-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,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

## 사회적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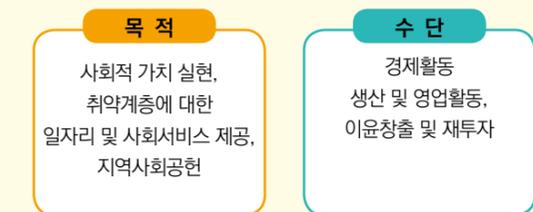
-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한 기업

## 예비사회적기업

-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



##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



# 사회적기업 인증요건

## 사회적기업·예비사회적기업 법령 및 요건 비교

구분	사회적기업	예비사회적기업
주관	고용노동부 장관 인증	광역자치단체장, 중앙부처장 지정
요건	① 조직형태	① 조직형태
	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(전월말 기준 1명)	② -
	③ 사회적 목적 실현 (계량화된 실적: 신청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실적)	③ 사회적 목적 실현 (정관 및 사업계획: 단 일자리제공형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고용)
	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	④ -
	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% 이상	⑤ -
	⑥ 정관 및 규약 구비	⑥ 정관 및 규약 구비
	⑦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	⑦ 이윤의 2/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
신청	상시 접수 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	위의 주관별 연중 1~2차 일정 공고
지원기간	최대 3년	최대 2년

## 조직형태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
-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단법인</li> <li>• 재단법인</li> <li>• 사회복지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익법인 (사회적)협동조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영리민간단체</li> <li>• 영농(영어)조합법인</li> <li>• 농업(어업)회사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식회사</li> <li>• 유한회사</li> <li>• 합자회사</li> <li>• 합명회사</li> <li>• 유한책임회사</li> <li>• 합자조합</li> </ul>
--	--	---	--

※ 개인사업자는 인증 불가

## 유급근로자 고용
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
- 신청기업은 신청일 직전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
  - ※ 다만,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고용
  - ※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,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

## 사회적 목적의 실현

-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
-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함

사회서비스 제공형	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	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	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: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% 이상</li> <li>-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: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</li> <li>- 지역의 빈곤·소외·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</li> <li>-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</li> </ul>
혼합형	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% 이상일 것
창의 혁신형	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

## 취약계층이란

- 저소득자
- 청년,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
- 결혼이민자
- 고령자
- 북한이탈주민
- 장애인
- 가정폭력 피해자
- 경쟁보호 대상자
- 노숙인
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보호대상자
- 성매매피해자
- 난민
- 기타(알콜·도박중독자, 학교밖청소년 등)
- 여성가장

- ➡ (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)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
-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, 외국인근로자,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, 학교폭력피해자,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

## 사회서비스란

- 교육
- 청소년 등 사업시설관리
- 보육
- 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
- 사회복지
- 간병 및 개인서비스
- 환경
- 가사지원
- 문화·예술, 관광·운동
- 산림보전 및 관리

##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- 사회적기업은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
  - ※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인정 (불가피한 경우,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구조 인정 가능)
-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일 직전 최소 1회 이상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

##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-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% 이상이어야 함
  - ※ 다만,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

영업활동을 통한 수입	노무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(누매출액)</li> <li>※단순 지원금, 보조금 해당하지 않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포함 : 인건비(세전), 제수당, 상여금, 일용임금, 퇴직금(지급금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외 :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외 : 교육훈련비, 퇴직급여충당금,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</li> </ul>

- 단, 자본 완전장식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자료를 통해 판단

## 정관·규약

-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(10가지)을 반드시 갖춰야 함
- 필수사항 : ①목적, ②사업내용, ③명칭, ④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⑤기관의 의사결정방식, ⑥수익배분 및 재투자 관한 사항, ⑦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, 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, ⑨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, ⑩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##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

-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함
-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배분 가능한 이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, 사회공헌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
  - ※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상법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,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일반협동조합 등에 적용
  - ※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익금 처분 내용 확인

#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지원제도	지원내용	지원대상	
		예비	인증
인건비 지원	<b>전문 인력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</li> <li>■ 지원금은 200~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부담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비사회적기업: 1차년도 10% → 2차년도 20%</li> <li>- 인증사회적기업: 1차년도 20% → 2차년도 30% → 3차년도 50%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■ 지원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비사회적기업 1명</li> <li>- 인증사회적기업 2명(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)</li> <li>*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■ 지원기간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</li> </ul>	○	○
	<b>(예비) 일자리 창출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예비)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</li> <li>■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(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18년도 이전 인·직정기업&gt;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비사회적기업: 1년차 70%, 2년 60%</li> <li>- 사회적기업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</li> </ul> </li> <li>*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</li> <li>&lt;19년도 이전 인·직정기업&gt;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비사회적기업: 1~2년차 50%</li> <li>- 사회적기업: 1~3년차 40%</li> </ul> </li> <li>* 취약계층 20%p 추가지원</li> </ul> </li> <li>■ 지원인원: 최대 50인</li> <li>■ 지원기간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</li> </ul>	○	○
사업개발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, R&amp;D, 홍보,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</li> <li>■ 상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한도: 연간 1억원(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5천만원), 최대 3억원</li> </ul> </li> <li>■ 자부담: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부담률: 1회차 10% → 2회차 20% → 3회차 30%</li> </ul> </li> </ul>	○	○
사회보험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업주 부담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(4년간)</li> <li>- 지원인원: 최대 50인 한도</li> </ul>	-	○
경영지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,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</li> <li>■ 지원한도: 총 5회(연간1회)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표준형: 3~10백만원</li> <li>- 자율형(지속성장형/공동형): 지원금액 제한 없음</li> <li>*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 분리</li> </ul> </li> <li>■ 자부담 :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~40%</li> </ul>	△ (기초만 가능)	○
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상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</li> <li>*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: 국가기관, 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841개소('18년)</li> </ul>	-	○
시설비 등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용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</li> <li>* 미소금융, 중소기업정책자금, 희망드림론 협약보증,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</li> </ul>	△ (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)	○
세제지원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기업에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 50% 감면</li> <li>■ 취득세·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</li> <li>■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 감면</li> <li>■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·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</li> </ul>	-	○
모태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(5개 조합, 290억원 규모)</li> <li>* '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</li> </ul>	○	○